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78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88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 의견	2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778호)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9. 8.

다. 회 부 일 : 2025. 9. 9.

2.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088호)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778호)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2.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088호)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과 농산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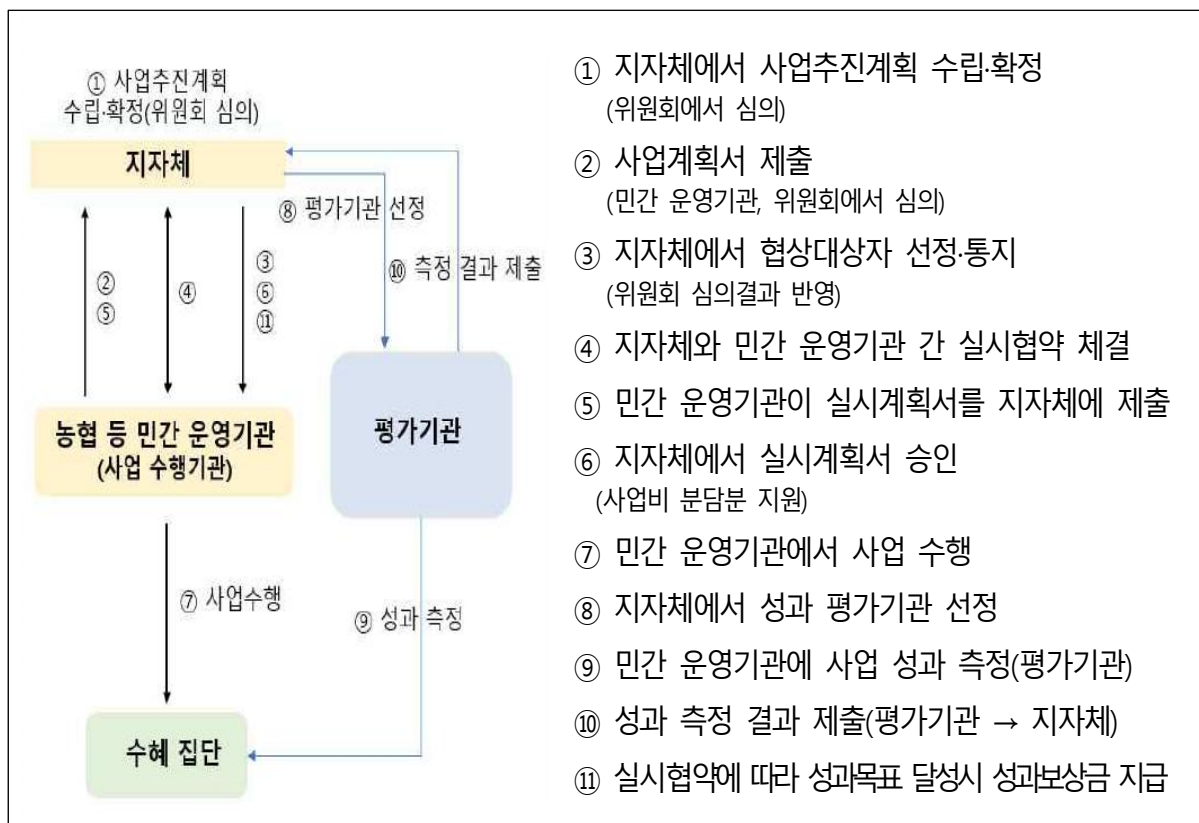
서삼석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이만희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용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서삼석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신설>	제11조의2(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농림어업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농림어업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2. 지역농림어업 사업의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사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2(재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민관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¹⁾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복리 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음.

동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을 민간 운영기관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민간 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합의된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과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체계 】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근거 마련)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고,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는 없는 상황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²⁾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서삼석의원안은 정부로 하여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우수사례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만희의원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① 현행법 제3조³⁾는 국가로 하여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②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유형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방법과 경험을 다른 지역과 공유·협력하는 체계는 신생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③ 현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재정

2)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2024. 4. 1. 제정)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운영기관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추정된다는 점⁴⁾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다고 봄.

다만, 현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정부가 민간 운영기관의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에 대한 성과보상은 민간 운영기관이 온전히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 보상 체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반드시 미리 편성할 필요가 없음.

이에 따라 지방비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성과 미달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사업의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주요내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농협 미래전략연구소, 2024. 12.)

즉,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체계 등이 본래의 취지와 다소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업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며, 중앙정부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비 지원 등은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또한, 농식품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등은 바람직하나, 기존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7

5) 한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법 체계적 측면에서는, 서삼석의원안은 법률상 용어를 일관적으로 기술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만희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민관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또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관계 부처이므로, 양 부처를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봄.